

인천광역시서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http://www.seo.incheon.kr/>

선	기관위원장
람	

제1570호 2021. 1. 4(월)

차 례

고 시

-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1호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고시 ----- 1

공 고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1호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 행복 증진 조례안 입법예고 ----- 5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3호 인천광역시 서구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14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4호 인천광역시 서구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 34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6호 보상계획 송시송달 공고 ----- 45

인천광역시 서구 고시 제2021-1호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변경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 1. 4.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 부여·변경 도로명주소 : 인천 서구 봉수대로 303-11 외 16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부여(변경)사유	도 로 명 고 시 일	도 로 명 부 여 사 유
		별 도 열 램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 서구청 토지정보과(☎560-4830)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21.01.04.일자로 고시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 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조서

고시일 : 2021-01-04

연번	지번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비고
1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223-875	인천광역시 서구 봉수대로 303-11 (석남동)	20090710	도로 구간 인근에 봉수대가 있었음	
2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동 0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90 (가정동)	20090922	서쪽으로 길게 뻗은 해안이라는 뜻으로 해안을 매립할 때 서곶이라는 이름을 남기고자 명명	
3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동 1-1637	인천광역시 서구 첨단서로 228 (청라동)	20101111	첨단산업단지 조성에서 착안	
4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1658-5	인천광역시 서구 보듬로 20 (오류동)	20121025	보듬로에서 여섯번째 분기되는 도로	
5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1639-12	인천광역시 서구 이든로 47 (오류동)	20121025	"착하고 어질다" 라는 뜻의 순우리말에서 착안	
6	인천광역시 서구 금곡동 0	인천광역시 서구 소담1로 66 (금곡동)	20191223	소담로에서 첫 번째 분기되는 도로	
7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452-2 외 14	인천광역시 서구 강남로19번길 8 (석남동)	20090922	강남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9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8	인천광역시 서구 심곡동 238-5	인천광역시 서구 승학로272번길 7 (심곡동)	20090922	승학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2,72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9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1708-5	인천광역시 서구 봉화로85번길 6 (오류동)	20090922	봉화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85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10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동 109-1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한울로41번길 28 (청라동)	20120330	청라한울로의 시작점에서 41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11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동 46-24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한내로161번길 14 (청라동)	20140804	청라국제도시 이미지 부각 및 청라한내로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610m 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12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동 96-20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한내로72번길 7-29 (청라동)	20140804	청라국제도시 이미지 부각 및 청라한내로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72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13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동 96-21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한내로72번길 7-31 (청라동)	20140804	청라국제도시 이미지 부각 및 청라한내로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72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14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351	인천광역시 서구 반월로81번길 18 (오류동)	20200720	반월로 시점에서 810미터 지점에서 분기한 도로	
15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351-16	인천광역시 서구 반월로81번길 16 (오류동)	20200720	반월로 시점에서 810미터 지점에서 분기한 도로	
16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동 13-25	인천광역시 서구 비즈니스로194번길 5 (청라동)	20201012	도로의 기점이 접한 대로, 로의 기초번호로 도로명부여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변경 고시조서

고시일 : 2021-01-04

연번	지번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비고
		변경전 도로명주소	변경후 도로명주소			
1	인천광역시 서구 심곡동 296-8	인천광역시 서구 심곡로 107 (심곡동)	인천광역시 서구 심곡로113번길 7 (심곡동)	20090922	심곡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13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21- 1호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 행복 증진 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 행복 증진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사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1. 4.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제정이유

-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의 행복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행복추구권을 지역 차원에서 앞장서 실현하고 주민이 중심이 되는 행복한 지역사회를 구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행복의 개념에 대한 정의 및 구청장의 책무 규정 (안 제2, 3조)
- 나. 구민의 행복증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5, 6조)
- 다. 행복지표 개발 및 측정에 대한 규정(안 제7조)
- 라. 주민행복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8 ~ 13조)
- 마. 행복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4조)

3. 의견제출

이 제정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1년 1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 의견을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참조 : 기획예산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 의견제출처

- 주 소 : (우22726)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307(심곡동)

인천광역시 서구청 기획예산실 담당자

- 전화번호 : 032-560-4045 (FAX 560-2703)

4. 참고사항

-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 행복 증진 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 행복 증진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의 행복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을 지역 차원에서 앞장서 실현하고 주민이 중심이 되는 행복한 지역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행복”이란 주민들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일상 생활에서 체감하는 삶의 안녕과 만족의 상태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 행복 증진을 위하여 정책을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주민 행복 증진을 위한 각종 정책을 수립·추진할 때 주민 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고 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한다.

③ 구청장은 주민 행복 증진을 위한 모든 정책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주민의 행복 증진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주민 행복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4년마다 수립·시행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주민 행복 증진의 기본 방향
2. 주민 행복 증진을 위한 추진 목표 및 추진 전략
3. 주민 행복 증진을 위한 분야별 주요 정책과제
4. 주민 행복 증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방안
5. 기본계획 시행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6. 그 외 주민 행복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는 때에는 구의 주요 정책과 체계적으로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제5조의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주민 행복 증진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한다.

② 구청장은 해당 연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종합 평가하여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제7조(행복지표 등) ① 구청장은 주민 행복 수준을 체계적이고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지역 특성을 반영한 행복지표를 개발·보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행복지표의 개발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의견을 행복지표에 반영한다.

③ 구청장은 행복지표 개발과 행복지수 측정을 위해 예산 범위에서 주민 행복 증진과 관련한 조사 및 용역을 실시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개발된 행복지표 측정 결과를 분석·평가하여 그 결과를 기본 계획 및 시행계획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주민행복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구청장은 구정 전반의 행복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행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변경
2. 주민의 행복 증진을 위한 정책 개발 및 변경
3. 그 밖에 주민의 행복 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9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회의 당연직 공동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위촉직 공동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인천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2.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3. 구민 행복 증진과 관련된 시민단체, 여성단체, 노동단체, 청소년단체, 노인단체, 문화예술계, 체육계, 학계 등 행복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공동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 활동 지원과 원활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해당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⑥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나 공무원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필요한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의 임기 등) ①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공무원 위원회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본다.

② 위원 본인이 원하거나 질병, 장기출타, 업무소홀,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구청장이 해촉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鑑定)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

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2조(공동위원장의 직무) ① 공동위원장은 공동으로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공동위원장을 보좌하며 공동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수당)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인천광역시 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행복영향평가) 구청장은 정책을 수립하거나 사업을 추진할 때, 그 계획이 주민의 행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계획이나 사업이 주민 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이하 “행복영향평가”라 한다)하고 이를 정책 및 사업추진의 의사결정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제15조(예산 운영) 구청장은 구의 예산이 주민의 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검토하여, 주민의 행복 증진을 위한 예산 편성 및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행복증진교육) ① 구청장은 구와 그 산하기관, 구의 예산지원을 받는 기관 등을 대상으로 행복 증진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가정, 사업장 및 평생교육시설과 그 밖의 연수교육 과정에서 행복 증진 교육이 실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위탁) ①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행복지표 개발·측정과 제13조에 따른 행복영향평가 및 제15조에 따른 행복 증진 교육 등을 전문성과 인력을 갖춘 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무 위탁운영은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주민 행복증진의 효과적인 실현을 위해 국내·국외 관련 기관 또는 단체·대학 등과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거나 협력할 수 있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h2 style="margin: 0;">의견제출서</h2>	
1. 자치법규명	
2.	성명(단체명/대표자)
	주 소
3. 의견	
4. 기타	
<p style="text-align: center;">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20px;">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20px;">의견 제출인 주소</p> <p style="text-align: right; margin-top: 20px;">(전화 :)</p> <p style="text-align: right; margin-top: 20px;">성명 (서명 또는 인)</p> <p style="margin-top: 20px;">인천광역시서구청장 귀하</p>	
비 고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기재

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21 - 3호

인천광역시 서구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1. 4.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개정이유

- 2010. 8. 5. 제정된 「인천광역시 서구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의 내용 중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과 다른 부분이 있고 일부 조문의 제목과 내용이 부합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 상위법령 뿐만 아니라 조문의 제목과 내용이 부합되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제3조의2(설치 및 운영목적)를 신설한다.
-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시설의 운영) 시설은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이 운영한다. 다만,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 제5조의2(시설의 위탁방법)를 신설한다.
- 제13조를 제6조의2로 하고, 같은 조(중전의 제1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항과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 수탁자 선정은 인천광역시 서구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결정한다.
 - ② 수탁자 선정 시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시설운영의 전문성 및 책임성, 공신력
 2. 재정부담능력
 3. 사업수행 능력, 실적, 인력, 기술 등
 4. 지역사회와 협력관계 조성능력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 ③ 제2항에 따라 위원(위원장을 포함한다)들의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점수를 평균하여 최고점수를 획득한 법인을 수탁자로 선정한다. 단, 동일점수를 획득한 경우에는 위원들의 표결에 의해 결정하고 그 결과를 즉시 공개하여야 한다.
- 제6조의3(위·수탁기간)를 신설한다.
- 제12조(수탁자 선정기준)를 삭제한다.
- 제13조(수탁자 선정)를 삭제한다.

- 제16조의2(시설운영비)를 신설한다.

3. 의견제출

이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1년 1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 의견을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참조 : 장애인복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 의견제출처

- 주 소 : (우22726)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299(심곡동, 서구청제2청사)
인천광역시 서구청 장애인복지과 담당자
- 전화번호 : 032-560-4096 (FAX 560-2742)

4. 참고사항

- 「인천광역시 서구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인천광역시 서구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 개정이유

2010. 8. 5. 제정된 「인천광역시 서구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의 내용 중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과 다른 부분이 있고 일부 조문의 제목과 내용이 부합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 상위법령뿐만 아니라 조문의 제목과 내용이 부합되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 개정내용

○ 제3조의2(설치 및 운영목적)를 신설한다.

○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시설의 운영) 시설은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운영한다. 다만,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 제5조의2(시설의 위탁방법)를 신설한다.

○ 제13조를 제6조의2로 하고, 같은 조(종전의 제1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항과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수탁자 선정은 인천광역시 서구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결정한다.

② 수탁자 선정 시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시설운영의 전문성 및 책임성, 공신력
2. 재정부담능력
3. 사업수행 능력, 실적, 인력, 기술 등
4. 지역사회와 협력관계 조성능력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③ 제2항에 따라 위원(위원장을 포함한다)들의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점수를 평균하여 최고점수를 획득한 법인을 수탁자로 선정한다.

단, 동일점수를 획득한 경우에는 위원들의 표결에 의해 결정하고 그 결과를 즉시 공개하여야 한다.

- 제6조의3(위·수탁기간)를 신설한다.
- 제12조(수탁자 선정기준)를 삭제한다.
- 제13조(수탁자 선정)를 삭제한다.
- 제16조의2(시설운영비)를 신설한다.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별첨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인천광역시 서구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서구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관하여 필요”를 “필요”로 한다.

제2조제2호 중 “「중증장애인 우선구매 특별법」 제2조제1항”을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2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만료 전”을 “만료 전”으로 한다.

제3조 중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 해당하며, 근로가 가능한 중증장애인 다수고용과 자체 수익을 통한 임금지급이 가능한 자립형 사업장을 목표로 한다”를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중 장애인 근로작업장에 해당한다.”로 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설치 및 운영목적) 시설은 근로가 가능한 중증장애인 다수 고용 및 자체 수익을 통해 임금지급이 가능한 자립형 사업장을 달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하며 나아가 장애인이 경쟁적인 고용시장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수행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시설의 운영) 시설은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운영한다. 다만,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

운영 할 수 있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시설의 위탁방법)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개 모집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한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제6조의 제목 “(위탁신청서류)”를 “(위탁신청서류등)”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출”을 “제출하여야 하고, 구청장은 선정된 수탁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위탁운영 결정통지서를 교부”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중 “위탁 운영”을 “별지 제1호서식의 위탁운영”으로 한다.

제13조를 제6조의2로 하고, 같은 조(중전의 제1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항과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수탁자 선정은 인천광역시 서구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결정한다.

② 수탁자 선정 시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시설운영의 전문성 및 책임성, 공신력
2. 재정부담능력
3. 사업수행 능력, 실적, 인력, 기술 등
4. 지역사회와 협력관계 조성능력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③ 제2항에 따라 위원(위원장을 포함한다)들의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점수를 평균하여 최고점수를 획득한 법인을 수탁자로 선정한다. 단, 동일

점수를 획득한 경우에는 위원들의 표결에 의해 결정하고 그 결과를 즉시 공개하여야 한다.

제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3(위·수탁기간등) ① 수탁자가 선정된 때에는 구청장과 수탁자 간의 위·수탁 계약서를 체결하여야 하며 위·수탁기간은 5년으로 하되, 수탁자의 사업실적이 우수하고 성실히 운영하는 등 구청장이 위탁의 갱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② 공개경쟁 절차를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5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수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③ 재위탁 의사가 있는 수탁자는 계약기간 만료 3개월 전에 재수탁 여부를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제1항 “제5조제1항의”를 “제5조의”로 하고 제5항 중 “장애인복지담당과장”을 “장애인시설 담당”으로 한다.

제8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6호를 제4호로 한다.

1. 시설의 수탁자 선정 심사
2. 시설의 위탁 갱신 시 수탁자의 수행실적 및 위탁관리 능력 평가
3. 운영비 등 비용에 관한 적격성 심사

제12조를 삭제한다.

제13조를 삭제한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기구 및 인력) 시설운영에 필요한 기구 및 인력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른 조직과 직제기준 및 정원의 범위에서 구청장과 사전 협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인건비를 보조금으로 지급하지 아니하는 직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시설운영비) ① 시설운영비는 사업수익금 및 수탁자부담금, 기타수익금 등으로 충당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으며 위탁운영에 필요한 재산은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구에서 시설운영비를 지원할 경우 시설은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등에 따라 목적과 용도에 맞게 집행하여야 하며, 매 분기마다 정산서를 구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구에서 정산을 요청할 때에는 즉시 응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한다.

<신 설>

제5조(시설의 운영) ① 시설은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운영한다. 다만,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운영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 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법인(재위탁 법인을 포함한다)은 구청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신청자 중에서 수탁자를 선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위탁운영 결정통지서를 교부한다.

③ 수탁자가 선정된 때에는 구청장과 수탁자간의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다만, 수탁자의 사업실적이 우수하고

제3조의2(설치 및 운영목적) 시설은 근로가 가능한 중증장애인 다수 고용 및 자체 수익을 통해 임금지급이 가능한 자립형 사업장을 달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하며 나아가 장애인이 경쟁적인 고용시장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수행한다.

제5조(시설의 운영) 시설은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운영한다. 다만,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운영 할 수 있다.

성실히 운영하는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탁자는 계약만료기간 3개월 전에 재수탁 여부를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갱신할 때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에 따라 수탁자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⑤ 시설운영비는 사업수익금 및 수탁자부담금, 기타수익금 등으로 충당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으며 위탁운영에 필요한 재산은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중전 제4항에서 이동 2016.7.8, 개정 2016.7.8)

⑥ 제4항에 따라 구에서 시설운영비를 지원할 경우 시설은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등에 따라 목적과 용도에 맞게 집행하여야 하며, 매분기마다 정산서를 구에 제출하

여야 한다. 단, 구에서 정산을 요청 할 때에는 즉시 응하여야 한다.(종전 제5항에서 이동 2016.7.8, 개정 2015.3.18., 2016.7.8)

<신 설>

제6조(위탁신청서류) 시설 위탁운영 신청자 및 재위탁 신청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위탁운영(재위탁) 신청서
2. ~ 6. (생략)

제13조(수탁자 선정) 제12조에 따라 위원(위원장을 포함한다)들의 최고 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점수를 평균하여 최고점수를 획득한 법인을 수탁자로 선정한다. 단, 동일점수를 획득한 경우에는 위원들의 표

제5조의2(시설의 위탁방법)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에 의하여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한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제6조(위탁신청서류등) -----

----- 제출하여야 하고, 구청장은 선정된 수탁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위탁운영 결정통지서를 교부-----.

1. 별지 제1호서식의 위탁운영-----

2. ~ 6. (현행과 같음)

제6조의2(수탁자 선정) ① 수탁자 선정은 인천광역시 서구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결정한다.

결에 의해 결정하고 그 결과를 즉시 공개하여야 한다.

<신 설>

② 수탁자 선정 시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 1. 시설운영의 전문성 및 책임성, 공신력
- 2. 재정부담능력
- 3. 사업수행 능력, 실적, 인력, 기술 등
- 4. 지역사회와 협력관계 조성능력
-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신 설>

③제2항에 따라 위원(위원장을 포함한다)들의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점수를 평균하여 최고점수를 획득한 법인을 수탁자로 선정한다. 단, 동일점수를 획득한 경우에는 위원들의 표결에 의해 결정하고 그 결과를 즉시 공개하여야 한다.

<신 설>

제6조의3(위·수탁기간) ① 수탁자가 선정된 때에는 구청장과 수탁자간의 위·수탁 계약서를 체결하여야 하며 위·수탁기간은 5년으로 하되, 수탁자의 사업실적이 우수하고 성실히 운영하는 등 구청장이 위탁의 갱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7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제5조 제1항의 수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구 장애인 직업재활 시설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 ④ (생략)

⑤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장애인복지담당과장으로 한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직업재활시설의 기본방향과 정책 수립
2. 직업재활시설의 행정적·재정적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② 공개경쟁 절차를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5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수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③ 재위탁 의사가 있는 수탁자는 계약기간 만료 3개월 전에 재수탁 여부를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제5조의 -----

-----.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
----- 장애인시설 담당-----
-----.

제8조(위원회의 기능) -----
-----.

1. 시설의 수탁자 선정 심사
2. 시설의 위탁 갱신 시 수탁자의 수

지원 및 발전 방안

3. 운영비 지원을 위한 선정기준 및
심사

4. 직업재활시설과 연계업체 및 지역
사회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직업재활시설 사업 평가에 관한 사
항

6. (생략)

제12조(수탁자 선정기준) 제5조제1항

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
자 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에 의하
여 수탁자를 선정하되 구청장은 신
청자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
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시설운영의 전문성 및 책임성,
공신력

2. 재정부담능력

3. 사업수행 능력, 실적, 인력, 기술 등

4. 지역사회와 협력관계 조성능력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정
하는 사항

제13조(수탁자 선정) 제12조에 따라

위원(위원장을 포함한다)들의 최고
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점수를 평
균하여 최고점수를 획득한 법인을 수
탁자로 선정한다. 단, 동일점수를 획
득한 경우에는 위원들의 표결에 의해

행실적 및 위탁관리 능력 평가

3. 운영비 등 비용에 관한 적격성
심사

<삭제>

<삭제>

4. (현행 제6호와 같음)

<삭제>

<삭제>

결정하고 그 결과를 즉시 공개하여야 한다.

제16조(기구 및 인력) ① 시설운영에 필요한 기구 및 인력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른 조직과 직제기준 및 정원의 범위에서 구청장과 사전 협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인건비를 보조금으로 지급하지 아니하는 직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시설의 고용대상 장애인은 인천광역시에 거주하고 있는 등록장애인으로 생산 활동에 종사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한다. 단, 중증장애인 비율을 60퍼센트 이상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비장애인 채용은 전체 작업인원수의 30퍼센트 범위에서 채용할 수 있으며, 수탁자가 생산공정상 꼭 필요한 경우라고 판단될 때에는 구의 사전 승인을 받아 추가로 채용할 수 있다.

④ 수탁자는 이 사업에 대한 시설장을 제외한 기존사업 참여자 및 직원에 대하여 고용승계를 원칙으로 한다.

⑤ 삭 제
<신 설>

제16조(기구 및 인력) 시설운영에 필요한 기구 및 인력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른 조직과 직제기준 및 정원의 범위에서 구청장과 사전 협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인건비를 보조금으로 지급하지 아니하는 직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6조의2(시설운영비) ① 시설운영비는 사업수익금 및 수탁자부담금,

기타수익금 등으로 충당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으며 위탁운영에 필요한 재산은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구에서 시설운영비를 지원할 경우 시설은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등에 따라 목적과 용도에 맞게 집행하여야 하며, 매 분기마다 정산서를 구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구에서 정산을 요청할 때에는 즉시 응하여야 한다.

의 건 제 출 서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 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 수반 협의 4. 주민의 권리와 이익 침해 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 여부 6. 기타 문제점		
실·국(군·구)별 의견			
협약개요	실·국별	제 출 의 건	검 토 내 용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21-4호

인천광역시 서구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사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1. 4.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제안이유

- 인천광역시 서구 청년기업의 창업 및 기업 활동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청년기업의 육성을 통한 경제활동 촉진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규칙의 목적(안 제1조)

나. 청년기업 인증 및 방법에 관한 사항(안 제2조 ~ 제3조)

다. 청년기업 인증서의 발급과 수정발급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제5조)

라. 유효기간의 만료 및 재인증에 관한 사항(안 제6조)

3. 의견제출

○ 이 제정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1년 1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참조 : 기업지원일자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032-560-4442, 팩스 032-560-2733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인천광역시 서구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1. 제안이유

- 인천광역시 서구 청년기업의 창업 및 기업 활동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청년기업의 육성을 통한 경제활동 촉진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규칙의 목적(안 제1조)
- 나. 청년기업 인증 및 방법에 관한 사항(안 제2조 ~ 제3조)
- 다. 청년기업 인증서의 발급과 수정발급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제5조)
- 라. 유효기간의 만료 및 재인증에 관한 사항(안 제6조)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인천광역시 서구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

제10조(청년기업 인증에 관한 세부 기준 등) 제6조부터 제9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청년기업 인증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인천광역시 서구규칙 제 호

인천광역시 서구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서구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년기업 인증) 「인천광역시 서구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청년기업 인증을 받고자 하는 기업은 이 규칙 제3조에 따른다.

제3조(청년기업 인증방법) ①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청년기업 인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인천광역시 서구 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청년기업 인증 신청서
2.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사본

② 구청장은 청년기업 인증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청년기업 현장실사 결과서에 의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실사 후 청년기업 인증을 결정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청년기업 인증 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인증서의 발급 등) ① 구청장은 조례 제8조에 따라 인증한 청년기업에 대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인천광역시 서구 청년기업 인증서(이하 “인증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인증 발급번호는 인증관리대장에 작성 후 인증 순서에 따라 부여한다.

제5조(인증서의 수정발급) ① 인증서를 발급받은 청년기업의 대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수정 발급을 요청하여야 한다.

1. 업체명이 변경된 경우
2.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3. 주업종이 변경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해당 기업의 대표자가 수정발급을 요청한 경우, 구청장은 관계 공무원의 현지 재실사를 거쳐 인증서를 수정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정발급한 인증서의 유효기간은 종전 인증서의 유효기간으로 한다.

제6조(유효기간의 만료 및 재인증) ① 구청장은 청년기업 인증 유효기간 만료 1개월 이전에 만료 사실을 기업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청년기업은 유효기간 만료일 1개월 이전부터 재인증을 신청할 수 있고, 재인증한 경우에는 종전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유효기간을 재산정하여 인증서에 기재한다.

③ 재인증에 따른 절차는 제4조에 따른다.

제7조(그 밖에 필요한 사항)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청년기업 []인증 []변경인증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고,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	-----

신청인	기업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업종
	대표자	형태 [] 법인 [] 개인	
	주소 (전화번호:)		

주생산품목

사업개시일

「인천광역시 서구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청년기업의 []인증 []변경인증을 신청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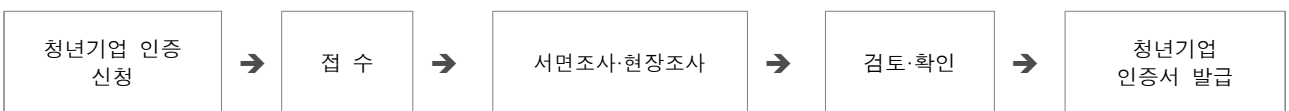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서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인증 신청의 경우 :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사본 2. 변경인증 신청의 경우: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	---	---------------

처 리 절 차



[별지 제2호서식]

청년기업 현장실사 결과서

현장실사일	년	월	일		
신청인	기업명			대표자	
	주소				
	[우]				
	설립(개업)일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청년대표자 취임일		생산품목		업종(표준산업분류)	
세부의견					
조사결과	적격[], 부적격[]				

현장실사자 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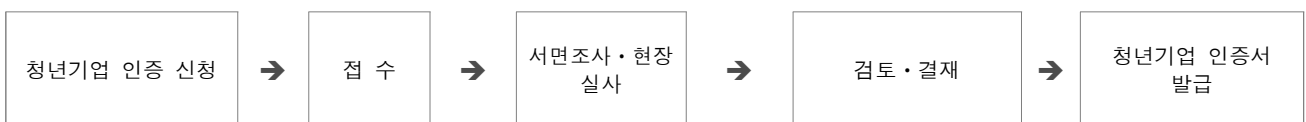
「인천광역시 서구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청년기업 인증을 위한 현장조사 실시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

(서명 또는 인)

처 리 절 차



[별지 제3호서식]

발급번호: 제 호

청년기업 인증서

1. 기 업 명:
2. 사업자(법인)등록번호:
3. 주 업 종:
4. 대 표 자:
5. 주 소(본점):

<지점현황>

000지점:

유효기간: . . ~ . . .

위 기업은 「인천광역시 서구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청년기업에 해당함을 인증합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서구청장

직인

* 대표자의 변경 등으로 청년기업의 요건에 맞지 않게 되는 등 조례 제9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 이내라도 청년기업의 인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h2 style="margin: 0;">의견제출서</h2>	
1. 자치법규명	
2.	성명(단체명/대표자)
	주 소
3. 의견	
4. 기타	
<p style="text-align: center;">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20px;">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20px;">의견 제출인 주소</p> <p style="text-align: right; margin-top: 20px;">(전화 :)</p> <p style="text-align: right; margin-top: 20px;">성명 (서명 또는 인)</p> <p style="margin-top: 20px;">인천광역시서구청장 귀하</p>	
비 고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기재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 2021 - 6호

보상계획 공시송달 공고

인천광역시 서구에서 시행하는 「대로2-61호선(드림로)확장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규정에 따라 공고 및 통지하였으나, 소유자의 주소 또는 거소, 그 밖에 송달장소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통지가 불가능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송달)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협의의 절차 및 방법 등)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1. 1. 4.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사업의 개요

- 사업시행지의 위치 : 인천광역시 서구 당하동 111-3번지 일원
-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 도시계획시설(도로 : 대로2류61호선)
 - 명칭 : 대로2-61호선(드림로)확장공사
- 사업의 규모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대로	2	61	30	주간선 도로	11,972	평동 6-3시계	광 3-23	일반 도로		인고94-172 (1994.4.15)	
금회 시행	대로	2	61	6.0	주간선 도로	450	당하동 1007-1	당하동 828-11	일반 도로			일부구간 폭원변경

2. 사업의 근거

- 1994. 04. 15. : 인천도시계획시설(시설:도로) 결정·고시 (인·고 제1994-172호)
- 2020. 06. 22. : 실시계획인가 고시(인·고 제2020-226호)

3.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지장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 붙임과 같음

4. 공시송달대상자 : 아래 붙임 참조

5. 보상계획열람(이의신청)기간 및 장소

- 열람공고(이의신청)기간 : 2021. 01. 04. ~ 2021. 01. 20. (15일간)
- 열람장소 : 인천광역시 서구청 도시기반과 도시관리팀(☎560-4485)
- 이의신청 방법 : 토지조서 및 지장물조서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 및 관계인께서는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열람기간 동안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6. 보상방법 및 절차

- 보상시기 : 2021. 1월 중 개별 통지할 예정입니다.
- 보상절차
 - ▷ 보상계획공고 및 열람 → 토지 등의 감정평가 → 손실보상협의 → 소유권이전 및 보상금 지급
 - ▷ 협의가 성립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 ▷ 보상금은 당사자와 보상협약이 성립된 경우에 소유권이전등기 완료 후 개인 은행계좌로 입금됩니다.

○ 보상금 산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의 규정에 의거 감정평가업자 3인(시장과 토지소유자가 모두 감정평가 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거나 시장 또는 토지소유자 어느 한쪽이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인)을 선정하여 평가 의뢰하고, 평가한 감정평가액의 산술평균치로 보상금을 산정합니다.

▷ 감정평가업자 추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보상대상 토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와 당해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 시행자에게 감정평가업자 1인을 추천 할 수 있습니다.

기간 내 추천이 없을 경우 사업시행자가 2인의 감정평가업자에게 토지 등의 평가를 의뢰할 예정입니다.

- 편입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세부물건조서를 개별통지하고 주소나 거주지 불명 등의 사유로 개별통지가 불가능한 경우 본 공고로 대신합니다.
- 기타 사업추진에 따라 보상일정 및 열람내용의 일부가 변경될 수 있으며, 조서내용에 포함되어 있더라도 추후 관계법령 등에 위반한 물건 또는 사실과 같지 않은 것으로 확인될 경우 보상대상에서 제외합니다.

7. 기타사항 및 문의처

- 보상계획 통보 및 이의신청서는 공시송달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에 그 송달받을 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갈음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구청 도시기반과 도시관리팀(☎ 560-448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의 명칭 및 공시송달대상

사업명 : 대로2-61호선(드림로)확장공사

공시송달대상

순번	공시송달 대상자		반송일
	성명	주소	
1	김*우	인천 서구 완정로64번길 *	2020.12.23.
2	심*구	인천 서구 백석동 1**	2020.12.17.
3	심*식	인천 서구 청마로 **	2020.12.17.
4	미상(이름없음)	인천 서구 당하동 8**-3	2020.12.17.
5	인*독*부*진*회	김포군 검단면 당하리 8**	2020.12.17.
6	미상(이름없음)	인천 서구 당하동 8**-11	2020.12.17.
7	포*나*봉*단	인천 서구 당하동 8**-5	2020.12.17.
8	미상(이름없음)	인천 서구 당하동 8**-5	2020.12.1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조서

□ 사업명 : 대로2-61호선(드림로)확장공사(인천광역시 서구 당하동)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소유자		관계인			비고
				지적	편입	성명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관계의 종류 및 내용	
1	당하동	877-2	답	20	20	인천독부*건*회	김포군 검단면 당하리 ***				
2	~	882	대	16	16	박**	인천시 서구 서곶로 ***, ***동 ***호 (당하동, 영남탑스빌아파트)				
3	~	1005-4	도	51	12	국	국토교통부				
4	~	858-5	대	3	3	김**	인천시 서구 완정로64번길 *, ***동 ***호 (마전동, 영남탑스빌아파트)				
5	~	857-3	대	45	45	허**	인천시 서구 비즈니스로28번길 ** ***동 ****호 (청라동, 청라동문굿모닝힐아파트)				
						허*	인천시 서구 서곶로 ***, ***동 ***호 (당하동, 성웅탑스빌아파트)				
6	~	855	답	49	49	심** (사망발소)	인천시 서구 백석동 ***	심**	인천시 서구 창토**, ***동***호 (당하동, 검단힐스테이트4차)	자녀	
								심**	인천 연수구 해돋이로 107, 3동 2005호 (송도동, 송도 다샵 퍼스트월드)	자녀	
								심**	경기도 군포시 고산로517번길 **, ***동 ***호 (산본동, 금강아파트)	자녀	
						심**	인천시 부평구 안남로 ***, ***동 ****호(청천동, 금호타운)				
						심**	인천시 서구 모월곶로 **, ***동 ***호 (경서동, 아시아드 대광로제비양)				
심**	인천시 서구 검암로 **, ***동 ****호 (검암동, 풍림아이원2차)										
7	~	827-7	전	104	104	박**	인천시 서구 서곶로 ***, ***동 ***호 (당하동, 영남탑스빌아파트)				
8	~	827-5	대	81	81	박**	인천시 서구 서곶로 ***, ***동 ***호 (당하동, 영남탑스빌아파트)				
9	~	828-3	대	132	132	김**	인천시 계양구 살라리로12번길 **_* ***동 ***호 (서운동, 해들목 휴먼빌리지)				
10	~	829-6	답	57	57	김**	인천시 계양구 계양문화로 ***, ***동 ***호 (용중동, 초정마을하나아파트)				
						김**	인천시 서구 독정로 **_* (백석동)				
						김**	인천시 서구 완정로 ** ***호(마전동, 동아프라자)				
						김**	인천시 남동구 서창남순환로 ****,**, ***동 ***호 (서창동, 서창퍼스트뷰아파트)				
계				558	519						

수용 또는 사용할 물건조서

□ 사업명 : 대로2-61호선(드림로)확장공사(인천광역시 서구 당하동)

연번	소재지	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m)	수량	실제 이용 상황	소유자		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1	당하동	877-3	메쉬웬스	철재 H1.36xL6.7	1식		두*가	인천시 서구 청마로112번길 **			
2	-	859-7	교목	26행x5열	130 주		박**	인천시 서구 청마로 ***, ***_**** (당하동, KCC)			
3	-	877-3	철재	원통	1식		미상				
4	-	828-11	컨테이너	철재 5.0x3.0x2.7	1동		미상				
5	-	858-5	컨테이너	철재 9.0x3.0x2.7	1동		포*나* 봉*단				
6	-	858-5	컨테이너	철재 3.0x3.0x2.7	1동		포*나* 봉*단				
7	-	858-5	컨테이너	철재 4.5x2.5x1.85	1동		미상				
8	-	827-7	이동식 간이화장 실	PP샌드위치판 넬 0.99x1.13x1.98	1동		천* (함*지*차)	인천시 계양구 장계로663번길 **, ***동 ***호 (작전동, 작전2차동보아파 트)			
9	-	827-5	컨테이너	철재 3.0x3.0x2.7	1동		천* (함*지*차)	인천시 계양구 장계로663번길 **, ***동 ***호 (작전동, 작전2차동보아파 트)			
10	-	827-5	컨테이너	철재 6.0x3.0x2.7	1동		천* (함*지*차)	인천시 계양구 장계로663번길 **, ***동 ***호 (작전동, 작전2차동보아파 트)			
11	-	827-5	동바리 그늘막	철재 4.9x4.5x2.9	1식		천* (함*지*차)	인천시 계양구 장계로663번길 **, ***동 ***호 (작전동, 작전2차동보아파 트)			
12	-	827-5	컨테이너	철재 2.4x2.4x2.7	1동		천* (함*지*차)	인천시 계양구 장계로663번길 **, ***동 ***호 (작전동, 작전2차동보아파 트)			
13	-	827-5	컨테이너	철재 6.0x3.0x2.7	1동		천* (함*지*차)	인천시 계양구 장계로663번길 **, ***동 ***호 (작전동, 작전2차동보아파 트)			

수용 또는 사용할 물건조서

□ 사업명 : 대로2-61호선(드림로)확장공사(인천광역시 서구 당하동)

연번	소재지	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m)	수량	실제 이용 상황	소유자		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14	당하동	828-3	컨테이너	철재 6.0x3.0x2.7	1동		김**	인천시 계양구 살라리로12번길 **-* ***동 ***호 (서운동, 해들목 휴먼빌리지)			
15	-	828-3	컨테이너	철재 9.0x3.0x2.7	1동		김**	인천시 계양구 살라리로12번길 **-* ***동 ***호 (서운동, 해들목 휴먼빌리지)			
16	-	828-3	컨테이너	철재 6.0x3.0x2.7	1동		김**	인천시 계양구 살라리로12번길 **-* ***동 ***호 (서운동, 해들목 휴먼빌리지)			
17	-	829-6	컨테이너	철재 6.0x3.0x2.7	1동		김**	인천시 계양구 살라리로12번길 **-* ***동 ***호 (서운동, 해들목 휴먼빌리지)			
18	-	828-11	이동식 간이화장실	PP샌드위치판넬 0.99x1.13x1.98	1동		김**	인천시 계양구 살라리로12번길 **-* ***동 ***호 (서운동, 해들목 휴먼빌리지)			

<input type="checkbox"/> 권리관계 <input type="checkbox"/> 토지등 누락 <input type="checkbox"/> 규격,수량 <input type="checkbox"/> 주소변경 <input type="checkbox"/> 가격관련 <input type="checkbox"/> 기타	
의 견 서	
1. 제 목	
2. 사업의 종류	「대로2-61호선(드림로)확장공사」
3. 당사자	성명(명칭)
	주 소
4. 의 견	
5. 기 타	
<p>「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 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21. . . .</p> <p style="text-align: center;">의견제출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p> <p style="text-align: center;">인천광역시서구청장 귀하</p>	
비 고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빙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